

A4-161

	A4	161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발전방안을 위한 포럼

일시 : 1997. 3. 19(수) 오후 2시~5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주최 :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

주관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발전방안을 위한 포럼

일시 : 1997. 3. 19(수) 오후 2시~5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주최 :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

주관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순서

개회식

인사말 김성재(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 의장)

토론

사회 : 김정열(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7
김행진(보건복지부 심의관)	21
이성재(국회의원)	23
강병근(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	33
김 완(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 회장)	45
신동열(시각장애인복지회복지관 관장)	55
설재훈(교통개발연구원 연구위원)	63

종합토의

* 토론내용의 일부는 확정되기 이전의 법안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해바랍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주요골자

- 가. 장애인등의 시설·설비 및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인정함 (제4조)
- 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을 정하고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세부적인 설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제8조)
- 다.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편의시설 설치촉진을 위하여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설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제11조, 제12조)
- 라. 국가등은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을 위하여 금융·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비용에 대하여는 조세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을 하도록 함 (제13조)
- 마. 구조적으로 세부기준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가 곤란한 대상시설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제15조)

카. 국가등은 장애인등의 이용이 많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휠체어 등을 비치하여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하도록 함 (제16조)

다. 편의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설치하며, 그 재원은 정부출연금, 이행강제금 등으로 함(제18조~제21조)

아. 이 법을 위반한 경우의 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제25조~제27조)

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편의시설설치비용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의 금액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28조)

차. 이 법은 공포한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함(부칙 제1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2.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당해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4. “시설주관기관”이라 함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5.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그 부속물과 지하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건설교통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하도로를 말한다.
6. “공원”이라 함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및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과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을 말한다.
7.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

8.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9. “교통수단”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철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및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10. “통신시설”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와 우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등 통신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 시설주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 (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동등하게 이용하고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한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도로
2. 공원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4. 공동주택
5. 교통수단
6. 통신시설
7. 기타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 (시설주의 의무) ①시설주는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하는 때에는 장애인들이 항상 대상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설주는 장애인들이 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 설치된 곳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편의시설에 관한 지도·감독)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시설주관기관은 그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실태조사) ①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등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실시시기, 실시방법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시설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설치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고) ①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설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설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실태 및 정비계획
2. 대상시설의 건축의 경우 대수선·용도변경의 경우 또는 교통수단 구입등의 경우에 있어서의 편의시설설치계획
3. 대상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홍보
4.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계획과 그 시행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계획등을 종합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3조 (설치의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지원과 기술지원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②법인 및 개인이 이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금액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등 조세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

제14조 (연구개발의 촉진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편의시설에 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 설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를 작성하여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에 대한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는 해당 편의시설에 관하여 건축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로 본다.

제15조 (적용의 완화) ①시설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8조제2항의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이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
2.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안전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대상시설의 용도 및 주변여건에 비추어 세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 장애인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시설이용상의 편의제공) ① 장애인등의 이용이 많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점역안내책자등을 비치하여 장애인등이 당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휠체어·점역안내책자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휠체어·점역안내책자등 비치하여야 할 용품의 종류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휠체어·점역안내책자등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등을 감안하여 실비로 할 수 있다.

제17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등) ①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운전자가 장애인이거나 장애인을 승차시키기 위한 자동차임을 식별하는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의 설치)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9조 (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징수액의 100분의 50

3. 기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②정부외의 자가 기금에 출연 또는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지방세법 기타 조세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한다.

제2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편의시설 상세표준도의 작성등 연구개발사업
2. 편의시설 설치등과 관련한 기술지원사업
3.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보조사업
5.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편의시설설치촉진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1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하되,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기금에 대하여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보건복지부장관과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에게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편의시설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의 적합성여부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3조 (시정명령등) ①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이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는 해당 시설주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주관기관에게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등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설주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4조 (청문) 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시설주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시설주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벌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의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 25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7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 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휠체어·점역안내책자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로서 제 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제3항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자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한 자
- ②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는 2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주 관기관이 부과·징수한다.
-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 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당해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 다.
-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제28조 (이행강제금)** ①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비용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위반정도에 따른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 다.
- ④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 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행하여야 한다.

⑤시설주관기관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⑥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⑦제27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징수액의 100분의 50은 부과권자가 사용하되, 다음 각호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1. 편이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2.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
3.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등의 생활편의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이행강제금의 부과권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강제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9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편의시설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 3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건축허가신청등 대상시설의 설치·변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시공중인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설치된 대상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상 7년내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경우에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시설주에 대하여 제23조, 제25조 및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0.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②장애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7조제3호를 삭제한다.

법안
설명

김행진
(보건복지부심의관)

토론

이성재 (국회의원)

편의증진법의 제정과 앞으로의 과제

이성재(새정치국민회의 국회의원)

1. 법안의 의미

U,N 은 장애를 신체장애(impairment), 능력장애(disability), 사회적장애(handicap) 으
로 나누고, 이에 따라 행동지침(world program of action)을 정했는데 이를 보면 예방
(Prevention), 재활(Rehabilitation), 기회의 균등화(Equalization of opportunities)를
정책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impairment를 줄이기 위해 impairment의 원인을 연구하고
의료적인 보호를 함으로써 질병과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disability는 impairment가 발생
한 후 조기개입(early intervention)함으로서 또는 물리치료 등을 함으로써 줄일 수 있다.
handicap은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분리시키는 요인들을 제거함으로써 예방될 수 있고, 독립적
인 삶을 위한 기회의 확대, 지역사회 재활 프로그램, 편의시설 설치 등에 의하여 감소될 수 있
다. 또한 기회의 균등화를 위한 정책에 의해 장애인이 시민으로서 완전참여와 통합을 이룰 수
있다.

즉, 장애인복지 정책은 장애예방, 재활, 교육기회의 확대, 고용의 확대, 편의시설의 확보등
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정책들을 제도화하는 법으로 미흡하나마 “장애인복지법” “특
수교육진흥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있으나, 편의시설에 관한 법은 장애인복지법 중
한 조문으로 상징적 의미만 가지고 있었다. 이런 제도적인 미비를 해결하고 장애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완전참여와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편의시설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반드시 필

요했다.

이 법률의 근본정신은 반차별(反差別)에 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다른 장애를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자유로이 다닐 수 있는 곳에 갈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이 얻는 정보를 얻을 수 없다면 이는 분명차별이다. 다만 차별의 형태가 간접적일 따름이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에 기초하여 차별의 철폐를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법을 만들면서 세운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중 그 첫째는 개인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건물등에 반드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편의시설을 설치 대상을 넓히고 그 강제성을 충분히 담보하는 것이었다. 둘째는 법이 실효성 문제다. 법은 있으되 시행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행정벌로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행정형벌로서 벌금형을 도입하였다. 시설주들의 반대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이를 국민적 도덕정서로 무마하고자 하였다. 셋째는, 복지부에 대한 향후 신뢰를 전제로 적극적행정의 기반마련에 있었다. 이를 위하여 기금을 형성하고 이 기금으로 연구와 지원을 병행토록 하는 것이었다.

2. 법안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

장애우등 이동약자의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편의증진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시기는 1996년 하반기이다. 정기국회를 앞둔 8월 개최된 공청회를 거쳐 본 의원은 편의시설 법안을 마련했다. 여당도 공청회를 거쳐 법안을 만들었다. 정기국회 막바지인 1월30일 본인은 동료의원 68인(이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의 동의를 얻어 '장애인·노인·임산부등 이동약자의 자유로운 사회적 이동·접근과 사회적 정보에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접근보장기본법' 안이라는 긴 이름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곧이어 12월2일 신한국당 의원 7명의 이름으로 '장애인 및 노약자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두 개의 안은 정기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 11차, 12차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토론을 통해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양당안의 커다란 차이는 보장구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느냐의 여부와 기금을 설치하느냐의 문제였다.

본인은 보장구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의 전면적 개정을 전제로 동법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본인의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문제는 기금의 설치였다. 법률심사위원중 일부를 제외한 의원들의 동의를 구했으나 일부 여당의원과 복지부는 “재경원의 반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불가”라는 입장이었다. 본인은 첫째로 기금이 없으면 편의시설에 대한 연구, 조사등 이 법의 과학적 운영이 힘들뿐만 아니라 기금이 형성된 뒤 시행될 시설주에의 지원 예를 들어 편의시설설치자금융자, 보조등 유인책을 쓸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 둘째로 복지문제가 언제까지 재경원의 눈치만 보면서 끌려 다닐 수는 없다는 점을 들어 강력 반발하였다. 급기야 법안의 상임위 통과가 어려워지게 됐다. 공적인 자리와 사적인 자리를 막론하고 여당위원의 설득에 온힘을 다 기울였다. 그러나 여당과 본인의 대치는 상임위 통과 마지막날까지 시한까지 이어졌다. “당신들보고 기금을 내라고 했냐?”고 소리를 높이면 “기금은 경제에 부담을 주니까 천천히 만들자. 이 의원이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고 맞받아쳤다. 마지막 수단까지 동원하였다. “내가 목발을 짚는 당사자인데 급하지 않게 됐는가”며 표결을 구했다. 통과되든 안되든 나는 표결결과에 따라 당장 장애인단체들을 찾아다니며 여당 아무개 의원이 법안 제정을 반대했다고 알리겠다”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여당 의원들이 나를 잡았다. 이날 자정이면 심의는 무산된다. 몇시나 됐을까 “표결은 무슨 표결이나? 합의하자”는 양보를 받 가냈다.

이렇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정부관계자를 참석시킨 가운데 4차례의 심사과정을 거쳐 12월 6일 보건복지위원회의의 대안으로 상임위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위와같은 경위로 상임위 통과가 늦어지는 바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지는 시간을 놓쳐 작년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번 임시국회에 복병이 숨어있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첫째 기존의 건물까지 모두 대상시설로 하면 소급입법제정금지에 위반한 위헌이라는 것이다.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벌을 과하도록 한 규정 때문이다. 즉, 기존건물의 건축허가를 낼 당시에는 적법하게 허가를 받았는데 나중에 제정된 이 법에 의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되는 것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것이다. 언뜻 들으면 그럴듯하다. 그러나, 본 의원의 해석은 다르다. 즉, 이 법이 시행되면서 즉각 편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건물주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 이 법의 공포와 더불어 일정한 유예기간 동안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새롭게 부과되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 시행 후에 부과된 의무를 불이행하는 사람만 처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소극입법이 아닌 것이다. 둘째, 상임위 안에 따르면 편의시설 설치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도 1억원 이하의 부담금을 내도록 하였다. 이에 대한 법사위의 견해는 하고 싶어도 불가능해서 설치를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돈을 받느냐는 것이었다. 본인의 해석은 또 다르다.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의 개념은 개인을 사유재산을 통제하는 법률이 아니라 사회공동체로서 연대하여 부담해야 할 의무, 헌법해석의 최고원리중 하나인 공공복리를 위한 모든 국민의 연대의무의 부과라는 것이다. 따라서,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한 사람은 설치를 해서, 하기 어려운 사람은 이행부담금을 내서, 불가능한 사람은 기금의 형성에 도움을 주는 형태로 의무를 지는 것이다. 셋째로, 이 법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2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야하는 것도 매우 강력한 수단인데 여기에 형벌까지 가하는 것은 형편에 맞지 않고, 둘째 공공의 안녕을 지키는 의무를 위반한 것도 아닌데 형벌로 다스리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점에 있어서도 나는 견해가 다르다. 이 법의 해석을 멀쩡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법사위 견해와 같은 결론이 날 수 있다. 나는 이런 예를 들었다. 나는 계단에서도 굴러보았고, 육교를 내려오다 굴러 빠를 다친 적도 있다. 이때 만일 계단에 손잡이가 제대로 되어있었다면 굴러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장애인의 입장에서 볼 때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의 신체적 안녕과 깊은 관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장애인의 눈높이에서 해석할 때 형벌로 다스림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다. 끝으로 장애인주차장에 불법주차시 물리는 과태료 50만원이 도로교통법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다. 이점에 대한 내 입장은 외국의 경우와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이고 설령 1000만원이 되더라도 세우지 않으면 부담이 되지 않는다. 굳이 불이행을 전제로 과태료의 다과를 논하지 말자는 것이었다.

지루한 논쟁이 거듭되면서 이번 회기에서의 법사위 통과가 난망이었다. 사실 다른 법이라면 나라도 지나치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었으나 그래도 가능하다면 초 강력 법을 만들어 보고 싶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법사위심의를 참여하여 토론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법사위의 고집에 대응할 수단이 없었다. 결정적으로는 장애인의 입장에서 완벽하게 만들어서 통과를 시키는 것과 조금은 미진하더라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을 비교해 볼 수밖에 없었다. 결심을 굳혔다. 선제정 후개선. 이제 새로운 협상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 결과 기존 건물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기존건물도 증축, 개축 등 변경을 가하는 건축행위에 들어서는 시점에서는 이 법이 적용된다. 또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과 공공시설은 기존시설이 각 할 지라도 적용이 되도록 하였다. 둘째, 시행령에서 적용완화대상에 흡수시키는 것을 전제로 불가능한 경우에 받는 부담금은 폐지하기로 하였다.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바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던 것도 1회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때 처벌하도록 단계를 두고, 벌칙도 징역형은 배제하고 1000만원 이하의 벌금만으로 합의를 보았다. 불법주차 과태료는 20만원으로 하였다.

3. 시행령의 올바른 방향과 내용

장애인 등 노약자를 '위한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이용자 모두를 '고려한다'는 차원에서 보아야 한다. 즉,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제반의 사회적 제약을 없애는 기본권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한 것이다.

장애인의 눈높이에서 시설들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편의시설의 설치도 장애인만을 위한 별도의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다.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은 행위에 전혀 장애를 느끼지 않는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유익할 뿐이지 결코 어떠한 희생이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시행령을 책상에서 만들면 안된다. 실제 휠체어를 타고, 손을 묶어 보기도하고, 눈을 가려보기도 하고, 귀를 막아보기도 하여야 한다.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제 국회의 책임은 다했다. 막중한 임무가 정부에 있다.

참고로 ADA법의 편의시설에 관한 부분의 목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목적

2. 일반사항

2.1 어른중심으로 수치를 결정

2.2 법률에 준하는 동등한 편의시설(법률에는 맞지 않으나 편의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와 유사하거나 이상일 경우 편의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3. 기타 사항 및 용어 정의

4. 설치대상 및 기술적인 사항

4.1 필수요소

4.1.1. 적용대상 및 원칙

1.대상 - 신축건물, 기존건물의 경우 변경되는 부분

2.건물용도에 따른 적용 - 특수건물인 경우 추가적인 요소들이 필요하다.

3.작업장은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4.일시건물 - 일시건물은 영구적이지는 않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사용빈도가 높음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예외 대상 - 신축건물이라도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4.2 ~4.35 : 경사로, 커브 경사로, 엘리베이터, 공간의 크기(휠체어용), 보도 및 마루 표면, 주차장, 계단, 휠체어리프트, 문, 창문, 입구, 식수, 욕탕, 화장실, 소변기구, 세면대 및 거울, 욕조, 샤워실, 샤워기구, 창고, 핸드레일, 각종 조절기구, 경보기, 각종 경고문, 전화, 표지판, 고정 의자 및 식탁, 자동음성장치, 의상실 등

5. 레스토랑과 카페테리아

6. 의료기관

7. 상업기관

8. 도서관

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시설 및 장소에 대하여 상세히 편의시설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다. 특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창문, 고정의자 및 식탁, 자동음성장치, 의상실, 샤워기구 등까지도 규정하고 있다. 즉 장애인이든 아니든 누구나 한 번이라도 가 볼만한 곳에 대해서는 상세히 규정을 하고 있다.

토론

강병근

(건국대건축공학과 교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검토 의견

강병근(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1. 법률(안)의 조항별 검토

가. 제 목

당초계획안	수정·보완 요구내용
<p>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안</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산부가 생활의 불편정도로 보아서는 장애인 임으로 보호되어야 함은 타당하나 임신 자체를 법률로 장애로 표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2. 임산부는 영구장애가 아닌 여러부류의 일시 장애중 한가지 이므로 표기를 삭제할 것을 건의 함 3. 실제 어린이, 환자, 유모차, 수레, 트롤리 사용 자등을 포함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이동, 접근, 이용등에서 일시적인 장애인 이므로 임산 부도 이와 같이 분류하여 표기치 안음 4. 유럽연합, ISO규정 등에도 '장애인과 노인' 으 로만 표기되어 있음

나. 제 1 조

당초계획안	수정·보완 요구내용
<p>1. 이 법은 <u>장애인·노인·임산부등이</u>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u>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u>으로 한다.</p>	<p>1. 이 법은 <u>장애인·노인등이</u>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u>사회활동참여를 보장하고 이들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u> 목적으로 한다.</p> <p>2. 「이동」, 「접근」, 「편의」 이 세가지는 한가지씩 분리하여 규정하거나 확보할 경우에는 그효용성이 전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항상 연계하여 동시에 검토,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즉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 보장은 「이동」, 「접근」, 「편의」로 세분화되는 생활환경 자체의 개선으로 이해되어야 한다.</p> <p>3. 장애인을 포함한 시설이용자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법의 제정 취지가 있는 것이지 장애인을 위한 추가적인 부담을 요구하는 법이 아니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함</p>

다. 제 2 조

당초계획안	수정·보완 요구내용
<p>①항 “장애인”등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u>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u>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p> <p>②항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u>시설이용의 편리</u>를 도모하고 <u>정보에의 접근</u>을 용이하게 하기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p>	<p>①항 “장애인”등이라함은 장애인·노인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u>이동과 시설 및 정보에의 접근, 이용</u>등에 불편을 느끼는자를 말한다.</p> <p>②항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u>접근</u>을 용이하게 하고 <u>이용의 편리</u>를 도모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등의 ‘접근권’이 정보에 한정하여 보장되어야 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자구를 수정 제안함 2. 「이동」, 「접근」, 「편의」의 용어는 구분되어 사용되어야 하며 시설과 설비에는 ‘이동’ → ‘접근’ → ‘편의’ 순서로 연계 적용되어야 함 3. 제4조 ‘접근권’에서 규정한바대로 시설과 정보에 각각의 접근을 의미 한다는 뜻으로 정리 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됨